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1. 일 시 : 2018. 2. 28. (수) 오후 1시

2. 장 소 : 국제관 3층 중회의실

3. 참석현황

1) 참석위원 (7명)

- 내부위원 : 기획처장(장미혜), 사무처장(조현준), 학생지원팀장(임영웅),
총학생회장(인영국), 총학생부회장(최중선), 대의원의장(송진섭)

- 외부위원 : 학생지원처장(김종규)

2) 불참위원 (1명) : 은혜고등학교 행정사무관(장세용)

4. 회의안건

1)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일부개정(안)

2) 기타사항

II. 회의 결과

가. 성원보고 및 회의 개최배경 설명

<제1호 안건.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일부개정(안)>

1)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일부개정(안)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설명 : 기획처 나희경 주임

①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구성원 자격 및 구성단위 확대를 위한 위원회 구성인원 확대
- 회의 개최 통보 시 회의 목적 명시, 통보방법 구체화, 통보 기한 제정
- 대학구성원에 회의 개최 목적 및 일정 사전 공개
- 회의결과 공개 기한 제도화
- 관련조항 : 제6조(위원회의 회의)

② 등록금심의회규정 일부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 : [붙임1]

③ 등록금심의회규정 일부개정(안) 전문 : [붙임2]

2) 등록금심의회규정 일부개정(안) 심의 이견 유무 확인

① 참석 위원 전원이 등록금심의회규정 일부개정(안)에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,의결함

5. 기타사항

등록금심의회 회의록의 공개 의무 설명 및 비공개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, 참석 위원 전체가 서명할 것을 위원 전원이 찬성함.

6. 폐회선언

2018. 2. 28. (수)

국제대학교 등록금심의회	위원장	장미혜	<u>장미혜</u>
	위원	조현준	<u>조현준</u>
	위원	김종규	<u>김종규</u>
	위원	임영웅	<u>임영웅</u>
	위원	장세용	<u><불참></u>
	위원	인영국	<u>인영국</u>
	위원	최중선	<u>최중선</u>
	위원	송진섭	<u>송진섭</u>

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일부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<u>8명의 위원으로</u> 구성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신설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신설></p>	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<u>8인 이상의 위원으로</u> 구성한다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. <신설 2018.00.00></u></p> <p><u>⑤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신설 2018.00.00.></u></p>
<p>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~ ④ (생략)</p>	<p>제5조<u><삭제 2018.00.00.></u></p>
<p>제6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신설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신설></p>	<p>제6조(위원회의 회의) ① <u>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종 매체(서면, 유선, 메세지, 이메일 등)를 통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통보한다.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위원회는 회의개최 7일 전에 개최일정, 개최목적 등을 교내 매체를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공개한다.</u></p> <p><u>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p>1. <u>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</u></p> <p>2. <u>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</u></p> <p>3. <u>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치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</u></p> <p>⑤ <u>제3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,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

[붙임2]

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

제정 2011.02.14 개정 2012.03.01
개정 2017.08.14 개정 2018.00.00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해당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
2. 교비회계 예·결산에 관한 사항<신설 2017.8.14>
3. 위원회 제 규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
4. 기타 위원장이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8.00.00.>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

1. 당연직 위원은 기획처장, 학생지원처장, 사무처장, 학생지원처팀장
2. 총장이 임명(위촉)하는 위원 : 학생(3명), 관계전문가(1명 : 학부모 또는 동문 포함)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.<신설 2018.00.00.>

⑤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신설 2018.00.00>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<삭제 2018.00.00.>

제6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종 매체(서면,유선,메세지,이메일 등)를 통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통보한다.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8.00.00.>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개최 7일 전에 개최일정, 개최목적 등을 교내 매체를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공개한다. <신설 2018.00.00.>

④ 위원회는 회의결과 요약내용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,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신설 2018.00.00.>

1.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2.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3.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치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

⑤ 제3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,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00.00.>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.

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처 담당자로 한다.

제8조(서면의결)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9조(등록금 자료의 제출) ① 위원회는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등록금 산정 근거 자료,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세칙)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